

## 8. 레디믹스트콘크리트 現場配置플랜트 設置 및 管理에 관한 指針

通商産業部 告示 第1995-73號  
建設交通部 告示 第1995-274號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실시 대상 건설자재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하여 당해건설공사의 품질을 철저히 확보함과 동시에 적기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사용하는 경우 당해시공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3.

통상산업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적기에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있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및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적용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치플랜트”라 함은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설비를 말한다.
2. “현장배치플랜트”라 함은 시공자가 당해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말한다.
3. “레미콘전문제조업자”라 함은 고정식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를 얻어 레미콘의 생산·판매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4. “생산능력”이라 함은 레미콘 배치플랜트의 혼합장치가 단위시간당 생산하는 용량을 말한다.
5. “출하능력”이라 함은 레미콘 배치플랜트가 실제 출하할 수 있는 단위시간당 용량 또는 생산능력의 80%에 해당하는 용량중 작은 쪽을 말한다. 다만, 실제 출하능력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능력의 80%로 본다.
6.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라 함은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당해 건설공사 현장의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가능한 거리내에 있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를 말한다.
7.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이라 함은 주변의 레미콘 전문제조업자의 평균출하능력에서 평상시의 가동율을 뺀 나머지 출하능력을 말한다. 다만, 평상시의 가동율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 레미콘전문

제조업자의 평균가동율을 이용할 수 있다.

8. “레미콘 수요성수기”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시 신규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1일은 8시간으로 한다)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대규모 구조물”이라 함은 당해 구조물의 착공으로 신규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공공공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의 장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고시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시공자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그 공사

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현장배치플랜트가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시·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방법) ①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②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 ①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생산·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시·도지사는 이를 기각한다.

1.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인 벽지지역·도서지역·교통체증지역 등
2. 압축강도가 400kg/cm<sup>2</sup> 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cm 이하인 레미콘이 사용되는 경우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일반콘크리트 이외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매스콘크리트·경량골재콘크리트·해양콘크리트·수중콘크리트·프리팩트콘크리트·슛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등 특수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
4.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이 상기 각호의 경우 이외에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 품질의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없어 레미콘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②레미콘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당해 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량을 충분히 생산·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의 일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2분의 1을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레미콘 수요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2. 대규모 구조물공사로 레미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③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이 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공동협력) ①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할 시·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

자의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레미콘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하도록 즉시 조정하여 시공자의 당해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 ①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유지한다.

②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된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건설기술관리법

#### <법>

#### 제24조의 2(건설자재의 품질관리) ①건

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 등”이라 한다)는 그 자재의 품질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생산자 등에게 품질시험의 결과를 요구하거나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참여하에 품질시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 제47조의 3(품질시험대상 건설자재) 법

제24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철강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5. 부순돌

#### 제47조의 4(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종류)

①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방법은 한국산업규격에 준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등은 품질시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시험대행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생산자 등은 제4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를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4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를 주문한 자는 납품서에 품질시험의 결과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나 그

건설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자재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3조(생산자등의 품질시험대상 건설자재) 영 제47조의 3 제4호에서 “철강재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수입철근
2. 수입 에이치(H)형강

제24조(건설자재의 품질시험종류 및 방법) 영 제4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건설자재의 납품서) 영 제4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의 납품서는 당해 건설자재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 내지 제14호 서식에 의하되 납품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

제6조(사업조정신청 등) ①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자 등이 고유업종의 사

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자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 및 명령)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자 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지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당해 대기업자 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자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자 등으로 하여금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후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구성)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상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조정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제10조(사업조정신청 등) ①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자가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조 제3항·제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권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